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5. 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 개정 내용

-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조례 제2조, 제7조, 제8조)
 -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차등화(붙임)
 -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
-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제9조)
 -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 규격 또는 1000cm²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대상에서 삭제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에서 삭제
-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제14조)
 - 신고포상금은 현금 이외에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금액(제15조)

- 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100만원에서 월50만원(신고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한 전국 포상금 합계)으로 조정

○ 기타사항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 관련 지침 :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를“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2호및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제3호중“ 월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를 “ 신고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전국 월5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한다.

제1조 본문중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9조제1호중 “ 식품위생법”을 “ 「식품위생법」”으로 한다.

“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③(생략)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1.(생략) 2.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1.(현행과 같음) 2.<삭제> 3.<삭제>	제9조(신고포상금 제외대상) 2.환경부고시 제2005-39호에 의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항목에서 삭제 3.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제외대상이므로 신고포상금 제외대상항목에서 삭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생략)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 <u>하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u> ②(현행과 같음)	제14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꾼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생략) 1~2. (생략) 3.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u>월100만원을 초과한 경우</u> 4~7. (생략)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u>신고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전국 월50만원을 초과한 경우</u> 4~7. (현행과 같음)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3.신고포상금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기준(제2조관련)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기준: 환경부예규 제 256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 무에 관한 규정 개정(2005. 02. 05)에 따라 과 태료 및 신고 포상금 지급액 조정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1)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백화점 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 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8조제5호 개정(2004. 11.30)에 따른 용어 개정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기준: 환경부예규 제256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2005. 02. 05)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 조정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1)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과태료 및 신고 포상금 기준: 환경부예규 제 256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 무에 관한 규정 개정(2005. 02. 05)에 따라 과 태료 및 신고 포상금 지급액 조정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 미터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 곱미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 터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 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 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 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